



서울대학교 대학원 연구생 규정

[시행 2020. 7. 30] [서울대학교학교규정 제2244호, 2020. 7. 30, 일부개정]

교무과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서울대학교 학칙」(이하 “학칙”이라 한다) 제98조에 따른 서울대학교 대학원 연구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[개정 2002. 6. 7., 2012. 7. 12., 2020. 7. 30.]

제2조(용어의 정의) 대학원 연구생은 대학원 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소정의 등록을 마치고 학위논문을 준비하는 사람을 말한다. [개정 2002. 6. 7., 2020. 7. 30.]

제3조(교과목 수강) ① 대학원 연구생은 논문지도교수의 추천과 소속 학과(부)장 또는 전공주임의 승인을 받아 논문제출자격시험 대체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.

[개정 2020. 7. 30.]

② 「서울대학교 학위수여 규정」(이하 “학위수여 규정”이라 한다) 제11조제5항에 따라 대학원 연구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석사과정은 6학점 이상, 박사과정은 9학점 이상 취득하되, 박사과정의 경우 2개 학기 이상 교과목을 수강하여야 한다. [개정 2020. 7. 30.]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수한 학점은 수료학점에는 포함하지 않으나 학적부에 등재한다. [개정 2020. 7. 30.]

[제목개정 2020. 7. 30.]

제4조(신분) ① 대학원 연구생은 재학 당시의 학과(부)·전공에 등록한다. 다만, 해당 학과(부)·전공이 폐지된 경우에는 해당 대학원 연구생의 졸업 시까지의 연구활동 및 논문지도를 위하여 원 소속 대학(원)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원 소속 학과(부)·전공과 유사한 교과과정을 운영하는 학과(부)·전공에 등록하도록 할 수 있다.

[신설 2020. 7. 30.]

② 대학원 연구생은 학교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으며, 본인의 신청에 따라 대학원 연구생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. [개정 2020. 7. 30.]

제5조(등록 및 등록기한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매 학기 지정된 기간에 대학원 연구생 등록을 하여야 한다. [개정 2020. 7. 30.]

1. 학위논문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
2. 실험 실습실, 대학원 연구동 등의 학교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할 때 각 대학(원)장이 연구생 등록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정한 경우
3. 중앙도서관, 관악학생생활관, 정보화본부 등 학교 제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

② 대학원 연구생의 등록기한은「학위수여 규정」 제11조의 각 학위과정별 논문 제출기한으로 한다. [신설 2020. 7. 30.]

[제목개정 2020. 7. 30.]

제6조(자격상실) 대학원 연구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소속 대학(원)의 대학원 학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자격을 상실하도록 할 수 있다.

[개정 2020. 7. 30.]

제7조(연구생 부담금 징수) ① 대학원 연구생에게는 학교시설 사용료 등 부담금을 징수하며, 학생 1명당 징수금액은 별표와 같다. [개정 2020. 7. 30.]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과목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수업연한 초과 등록자의 등록금 책정기준에 따라 연구생 부담금을 징수한다. [개정 2020. 7. 30.]

[제목개정 2020. 7. 30.]

제8조(세부사항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. [개정 2020. 7. 30.]

[제목개정 2020. 7. 30.]

부칙 <제2244호, 2020. 7. 30>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